

『퇴직연금 정기예금(발행어음)』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이 상품의 특약, 수신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발행어음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교부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 대상은 ①만19세 미만 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 ③피한정후견인 ④만65세 이상 개인입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퇴직연금 정기예금(발행어음)
- 상품특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목적으로 우리종합금융이 직접 발행하는 어음으로써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

2 거래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특약, 수령하시는 계약서류, 인터넷뱅킹의 고시금리 등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자산관리기관
구성상품	발행어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거래방식	퇴직연금사업자 중 자산관리기관이 우리종합금융으로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받아 고객에게 판매
계약기간	<p>1. 계약기간(만기)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 자산관리기관과 회사가 합의한 경우 1년 이내에서 별도 지정 가능</p> <p>2.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이 만기. 단, 공휴일 직전영업일에 해지 요청시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약정이자율로 지급하며, 앞당김 일수에 대한 이자 차감</p> <p>3. 만기가 도래한 계약은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자동 재예치하며,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의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만기 상환 가능</p>
적용이자율 (2022.05.31, 연이율, 세전)	신규일(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발행어음) 이자율이 적용됨 ※ 신규(재예치)시 적용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음

	(DB 365일 금리: 2.80%, DC/IRP 365일 금리: 2.70%)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증도해지 (분할인출)	분할인출 횟수 제한없이 가능 (증도해지이자율 적용)														
일반증도해지 이자율 (2022.05.31. 현재, 연이율, 세전)	<p>신규일(재예치일) 고시된 일반 법인 정기예금(발행어음) 기본이자율의 50% 기본산식 : (신규일(재예치일) 고시된 일반 법인 정기예금(발행어음) $\text{기본이자율} \times 50\% \times \text{보유일수} / 365$</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유기간(일)</th> <th>1-29</th> <th>30-59</th> <th>60-89</th> <th>90-179</th> <th>180-269</th> <th>270-364</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증도해지 이자율</td> <td>0.67%</td> <td>0.72%</td> <td>0.75%</td> <td>0.95%</td> <td>1.10%</td> <td>1.17%</td> </tr> </tbody> </table>	보유기간(일)	1-29	30-59	60-89	90-179	180-269	270-364	일반증도해지 이자율	0.67%	0.72%	0.75%	0.95%	1.10%	1.17%
보유기간(일)	1-29	30-59	60-89	90-179	180-269	270-364									
일반증도해지 이자율	0.67%	0.72%	0.75%	0.95%	1.10%	1.17%									
특별증도해지 이자율	신규일(재예치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계약기간별 이자율														
특별증도해지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급여지급 또는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라.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바.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나.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다.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라. 수탁자의 사임 마. 가입자의 사망 4.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계약이전 5.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제도전환 6. 수수료의 징수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예금자 보호여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확정급여형(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법 위반事實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과 최초 수수료 납부일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등(우편 또는 팩스, 전화, 전자우편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은 제외), 그 밖에 우리종합금융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인 경우 가능),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종합금융 홈페이지(www.wooriib.com)를 참조하시거나 우리종합금융 자금부(02-2000-6687/6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